

이미 남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7조(변상책임) 학생교육원의 이용자가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부과 정수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 정수된 것으로 본다.

별표의 제목을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 사용료 징수한도액"을 "학생교육원 사용료 정수기준 및 금액"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 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각종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사용료'라 함은 학생교육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식비, 간식비, 숙박비, 일반경비를 말한다.

② '일반경비'라 함은 교재대 등 부수되는 설비를 말한다.

제3조(사용료의 징수) ① 학생교육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원 또는 분원별로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교육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학생교육원의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에 퇴소한 경우 또는 과오납한 경우에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남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한다.
제6조(사용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사용료를 소정의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제7조(변상책임) 학생교육원의 이용자가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부과 정수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 정수된 것으로 본다.

[별 표]

학생교육원 사용료 징수 기준 및 금액
(단위 : 원)

구분	단위 (기준)	금액	비 고
식 비	1인 1식	2,700	
간식비	1인 1일	1,300	해당되는 경우에만 징수
숙박비	1인 1일 (1월 10명 기준)	2,000	실당 기준인원 미달시는 실당 20,000원 기준으로 1인당 금액 산출
일반 경비	1인당	2,700	해당되는 경우에만 징수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p>안 제17조 제1항 중 “법인 이사회의”를 “법인 이사회 등의”로 한다.</p> <p>안 제1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의장은 당해 여성발전센터의 소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추천하는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되 여성복지전문가 및 직업훈련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및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이하 “여성발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p> <p>②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성발전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균형과 여성의 사회참여나 복지향상이 필요한 지역과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여성발전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실 및 강의실 2. 회의실 3. 상담실 및 자료정보실 4. 보육실 5. 전시실 6. 강당 7. 기숙사 8. 수영장 등 체육시설 9. 식당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p>제3조(기능)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발전센터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사업 : 여성의 경제력 향상·능력개발 및 문화생활에 필요한 기술교육·생활문화교육 및 교양강좌 등의 교육프로그램 	<p>개설·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보육사업 : 아동의 보육을 위한 보육실 운영 3. 취업촉진사업 : 취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 및 알선 4. 상담사업 : 여성의 신상 또는 가정문제 등에 대한 상담·지도 5. 지역활동지원사업 : 지역여성단체·개인의 자원봉사, 사회참여활동지원을 위한 시설의 사용 지원 6. 기타 여성의 복지향상·사회참여 및 여가선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기숙사·도서실·수영장 등)을 운영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여성발전센터의 운영</p> <p>제4조(이용정원 등) 여성발전센터의 시설별·사업별 이용정원은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규모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p> <p>제5조(이용자의 자격) 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사업 : 서울특별시 거주 여성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여성 2. 보육실 : 여성발전센터 이용자가 동반한 만2세 이상의 아동 3. 기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기술교육생 나. 일시 보호필요여성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기술교육생의 이용에 시장이 없는 잔여시설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회의실, 강당 : 서울특별시 및 당해 여성발전센터 인근에 소재하는 단체 또는 개인 <p>제6조(이용우대 등)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모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용신청자에 대하여는 타 신청자에 우선하여 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습재료비, 교재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	--

<p>③ 세5조제1호의 교육사업으로서 이용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할 때에는 정원의 일정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이용하게 할 수 있다.</p> <p>④ 교육사업의 프로그램 성격이 가족단위 또는 남성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족 또는 남성에게 이용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p> <p>제7조(이용제한) 여성발전센터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여성발전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 없이 건물·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자. 2. 수강증 또는 이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기숙사에 타인을 동숙시킨 자 4.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자 5.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손해를 입힌 자 6. 시장이 정하는 반입금지 품목을 반입한 자 7. 기타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여성발전센터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p>제8조(기숙사의 이용) ① 기숙사의 이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교육생 : 1년 2. 기타 : 7일 <p>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숙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발전센터의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전염성 질병 등의 원인으로 타 이용자들과 기숙사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 <p>제9조(보육실의 이용) ① 여성발전센터에 두는 보육실은 교육기간동안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기간 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시장은 기술교육생 교육의 원활을 위하여 기술교육생 자녀가 우선하여 보육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p>	<p>③ 보육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식 또는 간식을 제공할 수 있다.</p> <p>제10조(시설의 이용) ① 여성발전센터의 교육실, 회의실 또는 강당 등의 시설에 대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단체 및 개인에게 허가할 수 있다.</p> <p>②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은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있으며, 이용 후 청소, 정돈을 하여 시설을 원상태로 즉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제11조(손해배상) 여성발전센터의 이용자가 당해 시장의 허가 없이 그 시설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그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p>
	제 3 장 사용료 등
	<p>제12조(사용료 등 부과·징수) ① 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에서 정하는 사용료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등은 선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후납하게 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시장은 여성발전센터 이용자의 가정형편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등의 종료되지 아니하는 기한내에서 후납하게 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13조(사용료등 면제) 기술교육수강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와 기술교육수강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료 및 강당, 교육실, 회의실의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에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4. 모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p>제14조(사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p>

<p>동의 반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장일 또는 시설이용일 전일까지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 전액반환 2. 개장일 또는 시설이용 개시일 이후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신고한 경우 : 신고월을 제외한 잔여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반환, 다만, 별표2의 사용료 등 중 시설사용료는 신고일을 제외한 잔여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반환 	<p>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자격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취업관련 상담자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4. 가족·여성문제 상담자 : 가족문제 및 여성문제에 대한 교육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제 4 장 운영의 위탁	제17조(관리운영규정) ①수탁자는 위탁받은 여성발전센터의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 그밖에 여성발전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법인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발전센터의 관리·운영을 여성 또는 사회복지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는 여성발전센터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여성발전센터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발전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운영협의회) ①여성발전센터의 운영평가 및 발전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센터별로 여성발전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의장은 당해 여성발전센터의 소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추천하는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되 여성복지전문가 및 직업훈련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④의장은 매 분기별로 여성발전센터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 회의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협의회는 여성발전센터의 운영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의장이 제출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⑥소장은 협의회의 심의결과가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조직)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발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직원을 둔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사무의 위임 등)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은 이를 여성발전센터의 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장 2. 교육·훈련담당자 3. 서무·경리담당자 4. 가족문제·여성문제 상담자 5. 취업관련 상담자 6. 기타 운영에 필요한 직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장 : 직업훈련·교육, 취업 등 관련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적합한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 2. 교육·훈련담당자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직업훈련·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별·사업별 이용 정원 지정
 2. 제5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 필요여성에 대한 기숙사 이용 허가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우대 등
 4.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한 여성발전센터의 이용제한
 5.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 이용의 제한
 6.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실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의 연장 또는 축소, 기술교육생자녀에 대한 보육실 이용 우선권 부여, 보육실 이용 아동에 대한 주식 또는 간식의 제공
 7.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용의 허가
 8.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 및 징수
 9.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후납 및 분할납부 결정, 징수한 사용료등의 반환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여성정책관(여성개발담당관)란의 사무명판 중 “○서부여성발전센터”를 삭제한다.
②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여성정책관(여성개발담당관)란의 사무명판 중 “○시립서부여성발전센터 관리운영”을 삭제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 또는 여성발전센터의 소장이 여성발전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행한 각종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처분 등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례 제6조제1항 및 13조제1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2000년 10월 1일 당해 법령시행시까지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본다.

제5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여성발전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여성발전센터로 본다.

[별표 1]

여성발전센터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서울특별시남부 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 139-2
서울특별시 중부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70-2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01-1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39-1

[별표 2]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등(제12조 관련)

구 분	단 위	사용료등	이용기준
기술교육 수 강 료	1인 1월	10,000원	○ 1일 3시간 이내 ○ 주 5일 기준
생활문화 수 강 료	1인 1월	10,000원	○ 1일 2시간 이내 ○ 주 1일 기준
보 육 실 이 용 료	1인 1월	7,500원	○ 1일 3시간 이내 ○ 주 5일 기준
수영수강료	1인 1월	40,000원	○ 월 20시간 이내
시 설 사 용 료	강당 교 育 실 및 회 의 실	1회1시간 1회2시간	10,000원 5,000원